

총장선임규정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<u>제4조(총장선임 기본절차) ① 법인은 원칙적으로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250일 이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현 총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되, 연임시키기로 결정 또는 연임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한다.</u></p> <p><u>② 전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현 총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하였을 경우, 이사장은 현 총장의 연임 의사를 확인한 후 적어도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이전까지 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현 총장을 연임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현 총장이 연임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, 이사장은 총추위를 구성하여 총추위에 총장후보자를 추천토록 요청한다.</u>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총장업적평가위원회</p> <p><u>제6조(구성) ① 이사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현 총장 연임여부 결정시 필요한 경우 이사회 내에 총장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현 총장의 업적을 평가토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평가위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방이사 1인을 포함한 법인 이사 3인으로 선임한다.</u></p>	<p><u>제4조(총장선임 기본절차) ① (삭제)</u></p> <p><u>② (삭제)</u></p> <p><u>③ 이사장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하여 총추위에 총장후보자를 추천토록 요청한다.</u>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총장업적평가위원회</p> <p><u>제6조(구성) (삭제)</u></p>

현 행	개정안
<p>③ 제1항에 따라 평가위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장은 현 총장 임기만료일 280일 이전까지 평가위를 구성한다.</p> <p>④ 평가위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.</p> <p>⑤ 평가위는 현 총장의 연임여부 결정과 동시에 그 활동이 종료된다.</p>	
<p>제7조(기능)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평가위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위는 현 총장의 업적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.</p>	제7조(기능) (삭제)
<p>제8조(평가) ① 제7조에 따라 현 총장의 업적평가지 평가위는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항의 현 총장 업적평가지 평가위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 수렴하도록 한다.</p>	제8조(평가) (삭제)
<p>제9조(경비 지원) ① 법인은 평가위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항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제9조(경비 지원) (삭제)
<p>제10조(간사) ① 평가위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간사는 법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</p>	제10조(간사) (삭제)
<p>제11조(운영) 평가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에서 따로 정한다.</p>	제11조(운영) (삭제)

현 행	개정안
<p><u>제13조</u>(구성 시기) ① 이사장은 <u>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<u>220일</u> 이전까지 총추위를 구성한다. 다만,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후 <u>40일</u> 이내에 총추위를 구성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서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<u>245일</u> 이전까지 학교에 교원 위원 추천을 의뢰한다. 다만,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후 10일 이내에 추천을 의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제13조</u>(구성 시기) ① 이사장은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<u>180일</u> 이전까지 총추위를 구성한다. 다만,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후 <u>30일</u> 이내에 총추위를 구성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서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<u>200일</u> 이전까지 학교에 교원 위원 추천을 의뢰한다. 다만,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후 10일 이내에 추천을 의뢰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24조</u>(총장후보대상자 물색) ① (생략)</p> <p>② 총추위는 총장후보대상자 물색과정에서 초빙공고, <u>대외인사와의</u> 공식적 면담을 실시한다.</p>	<p><u>제24조</u>(총장후보대상자 물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총추위는 총장후보대상자 물색과정에서 초빙공고, <u>총장후보대상자와의</u> 공식적 면담을 실시한다.</p>
<p><u>제27조</u>(추천기한) 총추위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<u>90일</u> 이전까지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후 <u>170일</u>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.</p>	<p><u>제27조</u>(추천기한) 총추위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<u>60일</u> 이전까지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후 <u>150일</u>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.</p>
<p><u>제31조</u>(선임시한) 차기 총장의 선임은 늦어도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<u>60일</u>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후 <u>200일</u>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</p>	<p><u>제31조</u>(선임시한) 차기 총장의 선임은 늦어도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<u>40일</u>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후 <u>170일</u>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</p>
<p>(신설)</p>	<p>부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7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</p> <p>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당시 재임 중인 총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연임 여부 결정없이 개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